



국 토 교 통 부



수신 경상남도지사(건축주택과장)

(경유)

제목 관원 질의 회신(농업·어업용 비닐하우스 관련)

1. 경상남도 건축주택과-8793호(2021. 4. 28)와 관련 문서입니다.

2. 질의요지

- 비도시지역 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기 설치된 비고정식 무허가 양식장 (우렁이양식용 비닐하우스)을 양성화하고자 하는데, 해당 양식장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0호의 간이축사용으로 보아 가설건축물축조신고(이하 '신고'라 한다.) 가능한지? 아니면, 위 양식장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9호의 농·어업용 비닐하우스로 보아 도시지역(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)이 아니므로, 신고 불가능한지?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1호의 농·어업용 고정식 온실 등이 아니므로, 신고 불가능한지?

3. 답변내용

- 「건축법」 제20조제3항에서는 재해복구, 흥행, 전람회,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하고 있고,
- ?건축법 시행령? 제15조제5항제9호에서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·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“농업·어업용 비닐하우스”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, 같은 항 제10호에서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“간이축사용”, 가축분뇨처리용, 가축운동용,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(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)구조 건축물을, 제11호에서는 “농업·어업용 고정식 온실” 및 간이작업장, 가축양육실을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때, 위의 제9호와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로서 “어업용 “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?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등을 말하며,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” 간이축사용 등 “의 용도는 축산 농가의 건축 편의를 제고하고자 축사의 기능을 보조하는 부대시설을 의미합니다.
- 이에 따라, 질의의 “비고정식 양식용 비닐하우스”가 콘크리트구조 기초 없이 토지위에 단순 설치된 구조로서 위의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, ?건축법 시행령? 제15조제5항제9호에 따른 “어업용 비닐하우스”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 그 설치지역이 주거지역?상업지역?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끝.

국토교통부장관



시설사무관

하애은

행정사무관

이형주

건축정책과장

전결 2021. 5. 14.

김성호

협조자

시행 건축정책과-5312

(2021. 5. 14.)

접수 건축주택과-10027

(2021. 5. 14.)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 국토교통부

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4838

팩스번호 044-201-5574

/ hanha1224@molit.go.kr

/ 대국민 공개

청렴한 공직사회, 행복한 국민생활